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040호

나. 발 의 자 : 오한아 의원(찬성자 31명)

다. 발의일자 : 2022년 1월 21일

라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25일

2. 제안이유

○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 · 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 ·시행에 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예술인 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○ 개정안은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음.

나. 개정의 필요성

○ 서울시 문화본부는 ‘문화로 행복한 서울 추진계획(2011.2.14.)’에 따라 열린공간을 활용한 거리예술활성화로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‘거리공연존’을 운영하고 2017년 「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‘서울365거리공연’을 시행하고 있음.

- ‘서울365거리공연 운영’ 사업은 서울도심의 공원·광장·시장 등 100여개소 열린공간을 ‘거리공연존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

2020년 코로나19로 8월부터 150팀이 선발되어 14개소(1,000회)에서 공연했고, 2021년 150팀이 50개소(2,000회)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음.

○ 또한,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구현하고 거리예술 및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'서울거리예술축제'와 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가 창작지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'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'를 운영하고 있음.

○ 문화본부의 '서울365거리공연'은 '문화예술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자'로 구성된 공연단이며, 서울문화재단의 '서울거리예술축제'와 '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'는 '예술인 혹은 양성된 예술인'이 참여하는 공연단으로 구성·운영되고 있음.

○ 「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(서울문화재단)」에 따르면, 일반시민이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56.4%로 2018년 44.2% 대비 12.2%p 증가하였고, 문화예술관람, 문화예술활동, 여행, 야외나들이를 희망하는 일반시민 계층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.

○ 따라서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 정책적 방안이라 할 수 있음.

다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2조(정의)는 현행 ‘항’으로 규정된 용어를 ‘호’로 나열하는 것으로 「법제이론과 실제(국회 법제실)」에 따르면, 하나의 조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에 항, 호, 목 등으로 구분하나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정의할 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호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보다 명확한 입법규정임.

○ 안 제4조는 전문, 비전문 예술가 또는 예술인·생활예술인 구분 없이 시민에게 더 많은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반영하는 것임.

- 최근 3년, ‘서울365거리공연’의 장르별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, 2019년 200팀, 2020년과 2021년 각각 150팀이 참여했으며, 음악(노래), 기악, 퍼포먼스, 전통 장르 순으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최근 3년, 서울365거리공연 장르별 참여자 현황>

연도별	음악(노래)	기악	퍼포먼스	전통	합계
2021년	82(55%)	30(20%)	26(17%)	12(8%)	150
2020년	90(60%)	24(16%)	23(15%)	13(9%)	150
2019년	118(59%)	37(18.5%)	30(15%)	15(7.5%)	200

○ 다만, 거리공연단 선발 시 집행부에서는 예술가나 시민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모집대상을 ‘문화예술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자’로 현재도 아마추어 공연단에게도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.

○ 따라서 시장의 책무에 ‘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’를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람이 아닌 참여를 통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.

담당 조사관	이지영 02-2180-8115
전문위원	강 헌 02-2180-8114

붙 임 **집행부 검토 의견**

의안번호 3040 **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오한아 의원	2022.1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주요내용	○ 시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대한 시장의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 노력의무를 규정함(안 제3조제2항 수정) -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		
추진경과	○ '22.1. :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(오한아 의원 대표발의)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 ) / 부결( ) / 보류( 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쟁점 사항 없음		
대응방안	○ 해당사항 없음		
상 임 위 처리결과	○		
향후계획	○ ○		
담당부서	문화정책과	팀장	김수현(☎2133-2540) 담당 주효근(☎2133-2541)